
2026년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복지급여과]

2026년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2026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641,060	1,049,823	1,339,759	1,623,685	1,889,180	2,138,988	2,378,788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 반영(4인가구 기준 6.51% 인상)/ 8인이상 가구 중위소득 1인당 959,198원씩 추가

<참고> 2025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598,004	983,165	1,256,339	1,524,444	1,777,048	2,016,202	2,247,107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지원액

- 2026년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1구간 대상자 지원액	410,270	671,880	857,440	1,039,150	1,209,070	1,368,950	1,522,420
2구간 대상자 지원액	205,130	335,940	428,720	519,570	604,530	684,470	761,210

<참고> 2025년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1구간 대상자 지원액	382,720	629,220	804,050	975,640	1,137,310	1,290,360	1,438,140
2구간 대상자 지원액	191,360	314,610	402,020	487,820	568,650	645,180	719,070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내 용	담 당
상담 및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확인 급여 동시 신청·접수 ○ 신청 관련 서류 징구 ○ 재조사 추진(보장기간 도래자 2개월 전 안내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조사	○ 신청급여 조사 진행 - 가구구성 확정, 소득·재산 공적자료 요청, 근로능력 판정, 조사정보 확인 및 처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적합/부적합 결정 의뢰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적합/부적합 결정 의뢰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적합 /부적합 결정 의뢰 -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적합/부적합 결정 의뢰	복지급여과 복지조사팀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및 통보 ○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및 통보 ○ 차상위계층 확인 결정 및 통보 ○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및 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자에 한 해 선정	복지급여과 생활보장팀
생계급여 지급	○ 매월 말일 지급(정기)	복지급여과 생활보장팀
변동 및 사후관리	○ 인적/소득·재산 변동관리 ○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 ○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기간(1년) 도래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재신청으로 재조사 실시 ○ 보장기간 도래자 2개월 전 명단 전송→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과 복지관리 1·2팀 생활보장팀

2026년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상존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상존
- 「착한도시 서구」에 걸맞은 착한 복지사업 시행
 - 나눔으로 성장하는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꿈꾸며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우뚝 설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 서구형 복지시책 추진

2 기본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선정기준 적합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하 ‘국기초’라 한다.) 및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하 ‘광주형’이라 한다.)으로 우선 보장 실시
- 광주 서구형(이하 ‘서구형’이라 한다.)은 국기초, 광주형, 차상위계층과 동시 신청
 - 공적자료를 활용한 적정급여 및 가구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 추진
-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준용
 - 신청, 보장가구, 별도가구, 조사, 급여 실시, 관리, 환수, 생활보장위원회 등

3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9조
-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등

4 추진경과

- 광주 서구 민선8기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선포(2023. 1. 16.)
 - 복지분야 핵심과제로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 실현 제시
- 광주 서구형 복지기준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2023. 2. 10.)

〈여기는 착한도시 서구입니다!〉

- 경기도 시흥시청, 시흥시 1% 복지재단, 경기도 복지재단
-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 컨설팅 추진(2023. 3. 3. ~ 2023. 4.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실-2320호(2023. 4. 26.)]
-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방침 결재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급여과-6402호(2023. 6. 8.)]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23. 6. 16. ~ 2023. 10. 1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7038호(2023. 10. 19.)]
- 사업 시행 관련 조례 개정(2023. 9. 11. ~ 2024. 2. 20.)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2024. 2. 20.)]
- 예산 확보(320회 서구의회 임시회 1회 추경 / 2024. 3. 20.)
[예산 확보액 : 67,975천원(구비 10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사전 협의 완료(2024. 2. 20. ~ 2024. 3. 26.)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657호(2024. 3. 26.)] 개통일 - '24. 5. 13.
-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2024. 7. 1.부터
- 2025년 찾아가는 복지틈새 제로 거점동 복지통장 교육(2025. 3. ~ 6.)
-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2025. 7.)
- 2025년 지원실적 : 19세대, 99,843천원 / '25. 12월말 현재

- 가구원 수별 지원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계	19	17	2	-	-	-	-	-
1구간	12	11	1	-	-	-	-	-
2구간	7	6	1	-	-	-	-	-

- 근로능력별 지원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계	근로무능력	근로무능력간주 (사례회의)	비고
계	19	19	-	
1구간	12	12	-	
2구간	7	7	-	

II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2 선정기준 <아래 ①, ②,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

①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641,060	1,049,823	1,339,759	1,623,685	1,889,180	2,138,988	2,378,788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이상 가구 중위소득 1인당 959,198원씩 추가

②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중 ‘근로능력없는 수급자’ 기준 적용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사례관리는 하지 않아도 됨)

* 자녀연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를 따름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함.

** 사례회의(동(洞) 사례회의, 근로능력 판단이 아닌 지원 필요 대상 여부 판단임)

· 동(洞) 사례회의 후 공문으로 복지급여과에 명단 송부[붙임 서식 5호]

· 행정절차 :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해당 동 및 복지조사팀 협력) → 동 사례회의 실시
(사례관리담당) → 복지급여과로 선정 결과 명단 송부(공문)

③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탈락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탈락 예정자 포함)
- 탈락자 중 본인 희망에 따라 탈락한 경우는 탈락자로 미인정
- 제3자 사용대차는 부양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주거지를 무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 실제 주거급여(현금, 현물)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주거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는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 불가

④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생계급여 : 의무 신청으로 반드시 탈락해야 함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미신청으로 미조사한 경우는 탈락으로 간주
- * 주거급여 : 의무 신청으로 반드시 탈락해야 함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는 탈락 및 책정 여부와 무관하게 서구형 선정 가능

3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매월,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410,270	671,880	857,440	1,039,150	1,209,070	1,368,950	1,522,420
2구간 대상자 지원액 **	205,130	335,940	428,720	519,570	604,530	684,470	761,21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국기초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 대상자 지원액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4 지원기간

- 1년 단위(1년간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신청으로 국기초 및 광주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재확인 후 지원
- 지원기간 중에도 중지 사유 발생 시 수시 중지
 - 중지사유 : 선정기준 초과, 서구 지역 외 전출, 실제 주소지 미거주, 부정수급 등
- 지원기간 중 긴급복지지원사업 · 노랑호루라기사업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 서구형은 일시 정지하고 지원 종료 후 재개(정지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

5 급여지원

- 매월 30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 매년 2월은 2월 말일에 지원

6 시행일자

- 2024. 7. 1.부터(지속)
 - ※ 국기초는 2000. 10. 1.부터, 광주형은 2018. 7. 2.부터 시행 중

Ⅲ 세부 추진계획

1 신청·접수

○ 신청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접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국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광주형, 차상위계층, 서구형 동시 신청·접수

- * 국기초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의무 신청 아님**(선택 가능)
- *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는 국기초 생계급여와 서구형만 신청(본인 희망 시 국기초 의료급여도 신청 가능)

- 서구형 단독 신청은 불가

※ 서구형 단독 책정 시 시스템상 소득·재산·근로능력 자료 미조회 및 정부양곡 지원 등 불가하여 차상위계층 동시 신청 및 결정 필요

단,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및 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확인 신청 **불필요**

- 긴급복지지원·노랑호루라기사업의 생계지원 대상자도 지원 종료 전 신청 가능

※ 국기초 및 광주형·서구형 등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종료 전 신청

(신청 시 상담 내용에 현재 긴급복지지원, 노랑호루라기사업 지원 사항을 기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국기초(생계·주거급여) 중지자는 국기초(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서구형 신청 관련 서류[붙임 서식 1호, 서식 2호]

※ 신청서는 광주형 신청서[붙임 서식 1호]와 함께 사용하므로 **통합 작성**하며,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2호]는 추가로 받고, 기타 신청 서류는 국기초 준용

※ **압류방지계좌 신청 불가**

2 조사 및 결정

○ 조사 실시(복지조사팀)

- 가구구성 확정, 공적자료 요청·반영, 근로능력 판정 요청·반영, 상담 등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간주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동과 협력하여 동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 여부 판단

- 소득의 공제율 적용 방법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조사 기준 적용

- 차량의 소득환산을 적용 방법 : 국민기초수급자의 조사 기준 적용
- 국기초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적용 방법
 - 동(洞) 사례회의를 통해 근로무능력으로 간주되는 가구는 미적용
- 국기초, 광주형, 차상위계층, 서구형 수급 자격 결정(책정, 제외) 의뢰
- 처리기한 : 신청일 기준 40일(연장 시 70일)

○ **보장결정**(복지조사팀/생활보장팀)

- 국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탈락자와 광주형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책정자 중 서구형 선정기준 적합자는 책정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가구는 미탈락 시에도 서구형 선정 가능하며, 의료·교육급여 미신청자도 탈락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 가능
-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미책정 시에도 차상위계층 책정자로 간주하여 처리
-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기준 적합 시 서구형과 중복 책정 가능
-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결과 통지서 및 지원 안내문 발송
[붙임 서식 3호, 서식 3-1호]
- ※ 국기초, 광주형, 차상위계층 등 결정 통보서와 함께 발송

3 급여의 실시(생활보장팀)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정액 지급)

○ **지 원 액** :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구간 (기준 중위소득 25% 이하)	선정기준	641,060	1,049,823	1,339,759	1,623,685	1,889,180	2,138,988	2,378,788
	지 원 액	410,270	671,880	857,440	1,039,150	1,209,070	1,368,950	1,522,420
2구간 (기준 중위소득 26%~50%)	선정기준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지 원 액	205,130	335,940	428,720	519,570	604,530	684,470	761,210

- ※ 지원액은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및 지원액 : 7인 가구 선정기준·지원액에서 6인 가구 선정기준·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함
- ※ 소득인정액별 급여 산정 시 일부 가구 소득 역전 현상 발생, 행정비용(시스템 사용료 등)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 방법을 채택하고, 소득·재산 변동사항은 별도 관리하여 적정급여 실시

○ 급여개시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국기초 또는 광주형에서 중지된 달에 서구형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 중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을 급여개시일로 함

○ 지원 일 : 매월 30일 / 2월은 말일에 지원

< 서구형 생계급여 지원 전 매월 확인사항 >

- 국기초, 광주형 책정 여부
 -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책정자는 지급 가능
- 긴급복지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사업 생계지원 여부
- 전출입 여부(서구 관내 포함)
- 차상위계층 **자산변동 확인(구간 변경)** 및 중지 여부(중지 시 서구형 기준 재확인)
 - ※ 부양의무자로 인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중지자는 차상위계층확인 직권 책정 검토

○ 지원방법 : 행복e음 연계 처리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원자료 생성

○ 자격 전환 시 지원 방법

- 서구형 대상자가 국기초·광주형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 국기초 또는 광주형 생계급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 월의 서구형 생계급여 지원액만큼 차감하고 지원

- ※ 해당 월에 지급한 서구형 생계급여가 국기초·광주형의 생계급여로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서구형만 지원
- ※ 해당 월에 지급한 서구형 생계급여가 국기초·광주형의 생계급여로 지원해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국기초·광주형 생계급여로 소급 지원

- 긴급복지지원·노랑호루라기사업 대상자가 서구형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서구형 생계급여를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중복 지급된 긴급복지 지원 또는 노랑호루라기사업 생계지원은 서구형에서 차감 상계(일할 계산)

○ 계좌 관리

- 압류방지계좌 불가
- 계좌 압류자 또는 개설 불가능자 : 현금 지급 가능[붙임 서식 6호]
 -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상자의 신청 후 변경 가능[붙임 서식 4호]

4 변동 및 사후관리(생활보장팀/복지관리1·2팀/18개 洞)

- 전출자 관리
 - 광주광역시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전출한 달까지 급여 지원 후 중지
 - 전출자가 1개월 이내 서구로 재 전입 시, 선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 서구 관내 전출입 시 임대차계약서 등 징구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
- 서구형 보장기간(1년) 도래 시 국기초 및 광주형 재신청으로 재조사 실시
 - 보장기간 도래 2개월 전 명단 전송(생활보장팀) →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에게 안내
-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등 확인조사 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서구형에도 반영
 - 서구형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또는 제3자 주거급여자 등 통합조사표 확인
- 지원기간 중 중지 사유 발생 시 수시 중지
 - 선정기준 초과, 실제 주소지 미거주, 부정수급 등
 -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중지 시, 서구형 선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
(통합조사표 메모 탭에 서구형 여부, 차상위계층 자산변동사항·중지 등 발생 시 알림 안내)

5 행복e음(지자체 행복이음) 활용

- 활용목적 : 행복e음을 통한 신청, 조사, 결정, 급여 및 사후관리 등 실시
- 활용기능
 - 신 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동
 - 조 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 조사
 - 결 정 : 신청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 지 급 : 급여생성 및 지급(e호조 연계)
 - 사후관리 : 사망, 전출 정보 등 제공
- 사 용 료 : 없음[표준업무유형(1유형*)에 해당하여 지자체 분담금 미부담]
* 1유형 :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 현금 → 정기(e호조 연계)

6 소요예산

- 예 산 액 : 100,000천원(구비 100%)
- 예산과목

부서)복지급여과	정책)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세부)서구형기초생활보장급여
편성목)일반보전금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

IV 행정사항

1 대상자 발굴

○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협조

- 18개동 찾아가는 복지틈새 제로 자생단체 교육 시 협조

* 대표밴드 게재 및 각 자생단체 회의 시 사업 안내 및 홍보[붙임 7]

- 자가진단표 동 민원대 부착, 민원 상담 및 적극 홍보[붙임 8]

-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통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가구’에 해당되고 선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 국기초, 광주형, 서구형, 차상위계층 등 급여 신청 시 동시 접수

- 보장기간 도래자의 국기초 등 동시 신청 안내

※ 복지급여과에서 해당자 명단 사전 송부 예정

○ 서구청 복지급여과

- 서구형 신청 가능대상자 선제적 발굴

· 확인조사 시 각종 복지급여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서구형 신청 가능대상자 발굴

· 긴급복지지원·노랑호루라기사업 등 생계지원 종료예정자 중 신청 가능대상자 발굴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가구로서 신청 가능대상자 발굴

-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명단 관리(실적 파악용)

- 행복e음 통합조사표 메모 탭에 서구형 여부, 차상위계층 자산변동사항·중지 등 발생 시 서구형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내용을 입력하여 지속 관리

2 홍 보

○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종 채널 활용 홍보[붙임 7, 8 안내문 활용]

- 자가진단표 부착 및 배부, 적극 안내 및 홍보

- 각 동 대표밴드 게재 및 각 자생단체 회의 시 홍보

- 게시판 게시, 서구소식지, 언론보도 자료 배포

- 서구 대표 SNS(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홍보

- 서구청 홈페이지 등 홍보

- 민간기관(복지관 등) 사업 홍보

- 붙임 1. 광주형 · 기타(서구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광주 서구형 신청용) 서식 1부.
3.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결과 통지서 서식 1부.
3-1.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안내문 1부.
4.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서식 1부.
5.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사례회의 결정 대상자 명단 서식 1부.
6. 광주 서구형 생계급여(현금) 수령 확인서 서식 1부.
7. 2026년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문 1부.
8. 2026년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자가진단표 1부. 끝.